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약 55억 4천만 달러에서 62억 4천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공지

미국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원이 승인한 집단소송 합의에 대한 공지 본 내용은 귀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 사건의 합의에 관해 통고하고자 해당 법원이 승인한 공지입니다.

소송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가 특정 은행권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으며, 하기의 행위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가맹점 수수료(일명 기본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 적용 및 시행하기로 답함,
- 가맹점이 고객이 기타 결제 방법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 그리고
-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기업 구조 변경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

피고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업 관행은 합법적이며 경쟁의 결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양측이 합의에 동의했으므로 어느 측이 옳은지 판결 내리지 않았으며, 법원은 본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했으며

합의서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약 62억 4천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보상금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한 특정 가맹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나, 차감액은 절대 7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순 집단소송 합의금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 사이에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가맹점의 유효한 청구에 대해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합의를 통해 다음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이 구성됩니다.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된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또는 (d)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거래를 인수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된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자신의 소송을 각하한 원고 및 그러한 원고와 관련된 실체입니다. 귀하가 각하된 원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을 확인하십시오.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점이 받는 것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집단소송에서 본인을 제외시키지 않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모든 가맹점으로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한 가맹점은 집단소송 합의금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각 청구 금액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가맹점의 마스터카드와 비자 직불카드 거래에 기인한 실제 및 추정된 정산 수수료에 근거할 것입니다. 집단소송 합의금을 적법하게 신청한 가맹점에 대한 일할 계산 지불금액은 아래 내용에 근거합니다.

- 아래에 기술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집단소송 합의금 금액,
- 집단소송에서 탈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차감 금액,
- 법원 승인에 의거한 합의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적용되는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집단소송을 대표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비용 차감,
- 청구된 모든 적법한 보상액의 전체 달러 금액.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비용 및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 지급: 합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까지 해당 소송건을 진행해 온 성과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법원에 합리적인 집단소송 합의 보상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며, 집단소송 건을 위해 일한 모든 변호인 및 그 법무법인에 지급하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은 집단소송 합의 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관리하고 보상금을 배분하며, 모든 항소 건을 소송하는 추가 업무로서 일반 시간당 요율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i) 4천만 달러 범위 내에서의 소송 지출 비용(합의 또는 공지의 관리 비용 불포함), (ii) 8명의 각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당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대리 업무의 서비스에 대해 최대 250,000달러의 지급을 요청할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 요청방법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은 청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 신청하거나 1-800-625-6440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

본 소송 건에 포함된 가맹점은 아래에 설명된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을 갖습니다. 내용:

- 보상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을 받으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경우 원할 시에 본인이 자비로 피고를 개별적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경우 본 합의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맹점 사업주이며, 자신을 제외시키기 원할 경우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어 선불 우표를 부착하여 **2019년 7월 23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이나 **2019년 7월 23일까지** 보낸 것으로 표시된 익일 배송으로 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으로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서면 요청서는 허가된 사람이 서명하고,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결제 카드 정산 수수료 및 가맹점 할인 독점금지 소송건)"이라는 문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납세자번호, (3)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가맹점과 가맹점을 제외해야 하는 본인의 직책 및 권한, 그리고 (4)탈퇴를 희망하는 가맹점의 모든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사업체”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매장 또는 영업 지점 주소. 또한 그러한 각각의 사업 또는 브랜드 이름(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모회사의 법적 이름(해당하는 경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카드를 받기 시작한 날짜(200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와 중단한 날짜(2019년 1월 25일 이전인 경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카드 거래를 취급한 모든 은행의 이름, 그리고 취급 가맹점 ID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한은 **2019년 7월 23일**입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을 확인하거나 1-800-625-6440으로 전화하십시오. 주의사항: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 및 선택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에 대해 법원이 승인하면

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지급 청구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약정에 명시된 면책된 당사자에 대한 청구 면제를 포함하여 본 합의의 조건에 구속됩니다.

합의를 통해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기타 피고에 대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금전적 보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가 해결되고 면제됩니다. 면책은 다음 청구를 금지합니다.

- 소송에서 주장하거나 제기한 행태 및 규칙에 근거하였거나 그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을 수 있는 행태 및 규칙 근거한 청구. 여기에는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여타 행태 및 규칙에 근거한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미 발생했거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 합의의 예비 승인 시 존재했던, 위에서 언급한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즉 성격이 상당히 변하지 않은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향후에 상당히 유사한 규칙에 근거한 이러한 청구는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합의의 판결 및 이러한 청구의 면책은 동일한 사실적 명제 원칙에 대한 연방법과 일치하고 그보다 범위가 넓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은 다음 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지 않았을 행태 또는 규칙에 근거한 청구.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되었을 행태 또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한 면책은 캘리포니아 시민인 가맹점을 대표하여 이루어지고 표제가 *Nuts for Candy v. Visa, Inc., et al.*, No. 17-01482 (San Mateo County Superior Court)인 캘리포니아 주 법원 집단소송에서 주장된 청구가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소송에서의 모든 유사한 또는 중복된 청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Nuts for Candy*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합의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및 승인 시 *Nuts for Candy*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Nuts for Candy* 소송 각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Nuts for Candy*의 원고측 변호인은 *Nuts for Candy*에서 6,226,6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 및 493,697.56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uts for Candy*에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

또는 지출 비용은 별도로 조달되며 이로 인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책은 금지명령 구제 청구 또는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Barry's*”)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금지명령 구제 청구에 대한 명제인 선언적 구제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구제 청구는 특정 행태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 또는 토출 등 금전의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Barry's*에서의 모든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소송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나머지 가맹점은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최대 오(5)년까지의 기간 중에 신규 및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포기하여 **면책합니다**.

또한 면책은 표제가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인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특정 청구 또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표준 상업 분쟁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면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보낸 공지 전문 및 www.PaymentCardSettlement.com의 합의 동의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에 대한 법정 심리

2019년 11월 7일에 제안된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심리는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비용 및 집단소송 합의 약정으로 종결된 MDL 1720의 가맹점 대리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 요청에 대해 심리합니다. 심리 장소: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Brooklyn, NY 11201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자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Robins Kaplan LLP, Berger Montague PC 및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질문사항

본 소송 건(*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MDL 1720)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신자부담 1-800-625-6440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확인, 아래의 주소로 집단소송 담당판에게 서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다음의 이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합의와 관련된 최신 정보 또는 합의 승인 진행절차에 대한 사항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